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7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 조은희 • 이성권 • 박정하

이달희 · 이만희 · 김상욱

정동만 · 김용태 · 신성범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분석,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.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 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.

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·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,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,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

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제출처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함(안 제8조).
- 나.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· 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·이용 저해요인 평가제 도를 신설함(안 제9조의2).
- 다.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·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 및 정부의 지원근거를 신설함(안 제15조).
- 라.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한 공공데이터 목록은 공공데이터전 략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.
- 마.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,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(안 제20조).
- 바.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·고가 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 런 규정을 신설함(안 제20조의2).
- 사.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

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(안 제22조의2).

- 아.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 (안 제26조의2).
- 자.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함(안 제30조의2).
- 차.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주체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, "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"를 "당사자"로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32 조).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수립"을 "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공공데이터 제공·이용 저해요인 평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·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(이하 "공공데이터 제공·이용 저해요인 평가"라 한다)를 요청

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,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③ 공공데이터 제공・이용 저해요인 평가의 방법・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활성화를"을 "활성화와 공공의 이익을"로, "관련 서비 스를"을 "데이터를 생성·취득하거나 관련 서비스를"로 하며,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, 단체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이용요건"을 "이용조건"으로, "인터넷 홈페이지를"을 "누리집을"로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조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제공목록 제외 대상과 주요 사유를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2(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·제공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대 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 등 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·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략위원 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 우, 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 어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된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·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품질인증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

- 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(이하 "공공데이터 품질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
- 2.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
- 3.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
- 4.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인증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·절차·심사방법·유효 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6조의2(가명처리 공공데이터의 제공)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,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0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

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32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은"을 "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받은 공무원은"을 "분쟁조정위원회는"으로, "공공기관에 자료"를 "당사자에게 자료"로, "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"를 "위한"으로 하며, 같은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2조제3항 중 "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"를 "따른"으로, "분쟁조정을 위한 사건"을 "사건의 조정"으로, "공공기관의 장은"을 "당사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"를 "당사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"를 "당사자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

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분쟁조정 사실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8조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제8조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) ① --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) ① 국 |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 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 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---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----.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 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 위원회에 제출하고, 전략위원회 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의 심의 •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 다. 야 한다.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신 설>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 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③ • ④ (생 같음) 제9조의2(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<신 설>

저해요인 평가)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 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· 변경하는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 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(이하 "공공데이터 제공·이용 저해 요인 평가"라 한다)를 요청하여 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, 그 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 고할 수 있다.

③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저해 요인 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15조(민간협력) 공공기관의 장 제15조(민간협력) ① -----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, 활성화와 공공의 이익을 -----

단체 등과 협력하여 <u>관련 서비</u> 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제19조(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 표)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 이터 목록을 심의·의결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 표하여야 한다.
 -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 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 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④·⑤ (생 략)

-----데이터를생성・취득하거나 관련 서비스를------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협 력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, 단체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 표) <u><</u>삭 제>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조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③ -----

----- 이용조

건 -----

<u> 누리집을</u> 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) 제20조(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) ① (생 략)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 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 정하여 심의 • 의결에 따라 제외 할 수 있으며, 전략위원회가 제 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 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 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 하여야 한다.
- ③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 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제공목록 제외 대 상과 주요 사유를 매년 전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2(중점개방데이터의 지 정ㆍ제공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 · 경제적 파 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 · 시급성이 높은 공공데 이터를 전략위원회의 심의 · 의 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전략위 원회는 공공데이터 소관 공공기

<신 설>

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
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된 공 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점개방데이터 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·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2(품질인증)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데 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 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 증(이하 "공공데이터 품질인증" 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 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하는

<신 설>

<신 설>
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
- 2.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
- 3.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 이터 관리체계
- 4.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적정 한 품질관리를 인증하기 위하 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 인증의 기준·절차·심사방법 ·유효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2(가명처리 공공데이터 의 제공)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,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30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업 무에 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

- 제32조(분쟁의 조정) ① <u>행정안전</u> 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-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 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

부터 제132소까시들 석용알 때
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제32조(분쟁의 조정) ① <u>분쟁조정</u>
위원회는 행정안전부
② 분쟁조정위원회는
<u>당사자에게 자료</u> -
위한
이 경우「개인정보 보
호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분
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
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
<u>할 수 있다.</u>
③ <u>따른</u>
<u>사건의 조</u>
<u>정</u>
<u>당사자는</u>
4)
<u>당사자</u>

담당지	<u>}</u> 를 =	출석	하게	하여	ユ	의
견을	들을	수	있다.			

-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- ⑥ ~ ⑨ (생 략)

⑤
<u>당사자로</u>
⑥ ~ ⑨ (현행과 같음)